

의안번호	제 / 호
의결년월일	1999. . .

의결사항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9. 2. 2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99. 2. 2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 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조직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비코자 사전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
 - (1) 대상사무의 기준
 - (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다)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2) 민간위탁 방법
 - (가) 기관위임사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자치사무 :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사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6조)

(1) 인원 : 6인이상 9인이하(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 포함)

(2) 내용

(가) 위 원 장 : 부시장

(나)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위 원 :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규정함 (안 제8조)

(1)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 수탁기관

(2) 감독 책임 - 시장

(3)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 -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함

라. 협약체결에 있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사무의 위탁 등)

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

- [경남도 자치 12200 - 1006('99. 1. 5)호]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 (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